

전용궤도 운영 []변경승인신청서
[]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일
신청인 (신고인)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:)
	상호	
변경 내용	현행	
	변경	
	변경일	
	변경사유	

「궤도운송법」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신청인 (신고인) 제출서류	1. 전용궤도운영 승인증(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2. 변경사유서(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3.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. 시설운영계획서 나. 기본설계도서 다. 공사설명서 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 한 검토의견서 마. 도로·하천·농지·산림·공원·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 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.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	수수료 변경허가 2만 원 변경신고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
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
신 청 인(신고인)	처리기관
	특별시 · 통합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
신 청 → 접 수 ↓ 제출 서류 검토 ↓ 결 재 ↓ 승 인 (신고확인) ← 증서 발급 ← 승인증 (신고확인증) 관계 지자체 협의 (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궤도가 걸쳐 있는 경우)	